파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시 보

제1587호

2018년 2월 23일 (금)

차 례

입법예고

○ 파주시 공고 제2018-301호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고 시

○ 파주시 고시 제2018-50호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BTO) 실시계획(변경) 승인 4

○ 파주시 고시 제2018-51호 도로명주소 고시 …… 6

공 고

○ 파주시 공고 제2018-303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변경 공고 …… 7

회람									

발 행 : 파 주 시

파주시공고 제2018-301호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2. 개정이유

○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불명확하고 비합리적인 내용을 개정하고,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제고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제명 개정

나. 법제처 자치법규 컨설팅에 따른 지적사항 개정(안 제3조, 제4조, 제4조의2)

- 노상주차장의 가산요금에 대한 불명확한 규정 삭제
- 주차장 운영·관리 조례위임 및 주차장 사용제한 규정 정비

다. 주차요금 감면 규정 정비(안 제3조의2)

- 성실납세자, 국가유공자 등 감면 재정비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감면 신설

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관련 제도개선 권고 사항 반영 신설 (안 제6조, 제6조의2~4, 별표 6)

마. 단지조성사업 종류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규정 일부 삭제(안 제14조)

바.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설치범위 개정(안 제28조)

사. 전통시장 주차장 월정기 주차요금제 미시행 근거 규정 신설(안 별표 1)

아.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개정(안 별표 2)

-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종류 및 기준 개정
- 첨단산업공장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4. 개 정 조 례 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3월 15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도시경관과)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1(우편번호 10930) 파주시청 별관 도시경관과

○ 전화 : 031-940-4783/ FAX 031-940-478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파주시고시 제2018-50호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BTO) 실시계획(변경) 승인

파주시고시 제2016-189호(2016.12.14.)로 고시된「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BTO)」의 실시계획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3일

파 주 시 장

1. 사 업 명(변경없음)
   ○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BTO)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법 인 명 : 파주그린허브 주식회사
   ○ 대 표 자 : 홍 진 호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금빛로 15, 307호(금촌동, 미라클프라자)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 파주시 LCD산업단지 공업용수 사용량 증가에 따른 공업용수 부족문제 해소
   ○ 물재이용을 통한 친환경 수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장래 용수 수요량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공업용수를 공급하고자 함

   나. 사업의 개요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703-10번지 일원
   ○ 부지면적 : 5,501㎡
   ○ 사업규모 : 시설용량 41,200㎥/일, 송수·공급관로 13.5㎞

4. 총사업비 : 60,469백만원(2014. 10. 1. 불변가격 기준)(변경없음)

5. 사업기간(변경)

○ 공사기간(변경)

- 당 초 : 2016년 12월 16일 ~ 2018년 3월 15일(착수일로부터 15개월)
- 변 경 : 2016년 12월 16일 ~ 2018년 5월 31일(착수일로부터 17.5개월)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변경없음)

6. 사업시행방법(변경없음)

○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명	
	합 계			5,501	5,501			
1	파주시 금촌동	703-8	답	578	578	고양시 일산서구	전민자	재이용시설
2	파주시 금촌동	703-9	답	1,745	1,745	고양시 일산서구	전민자	재이용시설
3	파주시 금촌동	703-10	답	3,178	3,178	월롱면 도내리	전명순	재이용시설

8. 실시계획 승인조건 : 따로 붙임(게재 생략)(변경없음)

9. 관계도서 : 게재 생략(변경없음)

10. 기타사항

기타 관계서류(실시계획 승인조건, 관계도서, 토지조서 등)는 파주시 맑은물환경사업단 하수도과(031-940-5522)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고시 제2018 - 51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2. 23.

파주시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감악산로 1311-30 외 2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지적과(☎940-489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2. 2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파주시 공고 제2018-303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변경 공고

「농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변경·해제 승인을 받은 파주시의 농업진흥지역 정비도면(1/5,000)을 다음과 같이 해제 및 변경 공고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공고합니다.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는 파주시 산림농지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보여드립니다.

2018. 2. 23.

파 주 시 장

1.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변경

(단위 : ha)

구분	승인전			변경·해제				승인후		
	계	진흥구역	보호구역	계	진흥구역(감)	보호구역(증)	보호구역(감)	계	진흥구역	보호구역
파주시	10,586.0272	10,169.3432	416.6840	60.8816	23.2019	37.6797		10,562.8253	10,108.4616	454.3637

※ 승인전은 농식품부 승인 통보시 용도(유형)별 면적에서 기해제 지역을 제외한 면적임
※ 진흥구역(감)은 해제, 보호구역(증)은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 보호구역(감)은 해제

2. 해제 및 변경 사유

o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902(2018.2.20.)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승인 통보

3.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변경 도면(1 : 5,000) 및 토지조서 : 파주시 산림농지과 및 각 읍·면·동사무소 비치

4. 기타 : 농업진흥지역 확인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은 1/5,000 상세(정비)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해제 및 변경 필지의 각종 증명서는 전산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종전과 같음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